

어울림

파주금촌 금호어울림 임차인 모집공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5.06.25.(수)]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 일원(파주시 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공급대상 : 전용면적 26㎡~59㎡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850세대(특별공급 170세대, 일반공급 680세대)
- 사업주체 : (주)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시 공 사 : 금호건설(주)

1 주택공급내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주택과 - 26098호 [2025.06.25.(수) 임차인모집공고 신고]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 일대(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7개동, 총 1,055세대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850세대(특별공급 170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관리 번호	주택형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m ²)					공급 세대수			입주예정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공급	계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청년			
2025850008	26A	26.9146	11.8217	38.7363	23.9559	62.6923	170	-	170	2025년 11월
	26B	26.9146	11.8217	38.7363	23.9559	62.6923	-	221	221	
	46	46.7967	19.5678	66.3645	41.6525	108.0169	-	197	197	
	59A	59.8551	25.2298	85.0849	53.2754	138.3603	-	202	202	
	59B	59.8387	26.0643	85.9030	53.2608	139.1638	-	60	60	
합계		-	-	-	-	-	170	680	850	

※ 실시설계 및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표준형 기준, 선택 조건별 상이)

(단위 : 세대, 원)

공급유형	타입	동별, 층별	공급 세대수	임대보증금 및 납입시점			월임대료 (전층)
				총액	계약금(10%)	잔금(90%)	
청년 특별공급	26A	105동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70	10,000,000	1,000,000	9,000,000	355,000

- 일반공급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표준형 기준, 선택 조건별 상이)

(단위 : 세대, 원)

공급유형	타입	동별, 층별	공급 세대수	임대보증금 및 납입시점			월임대료 (전층)
				총액	계약금(10%)	잔금(90%)	
일반공급	26B	105동 4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18호 라인	221	25,000,000	2,500,000	22,500,000	365,000
	46	106동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라인	197	69,000,000	6,900,000	62,100,000	425,000
	59A	101동 1호, 2호, 4호, 102동 1호, 2호, 3호, 103동 1호, 2호, 104동 1호, 2호, 3호, 107동 1호, 2호, 4호 라인	202	89,000,000	8,900,000	80,100,000	497,000
	59B	102동 4호, 104동 4호, 107동 3호 라인	60	89,000,000	8,900,000	80,100,000	497,000

- 임대조건 선택 안내

- 최초 계약시 표준형, 선택형1, 선택형2 중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선택한 임대조건은 임대차계약 기간 내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계약금은 총 임대보증금의 10%이며, 잔금은 입주 전 총 임대보증금과 계약금의 차액을 납부 바랍니다.

(단위 : 세대, 원)

구분	주택형	공급 세대수	표준임대료		선택형1		선택형2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특별공급	26A	170	10,000,000	355,000	3,000,000	385,000	35,000,000	247,000
	26B	221	25,000,000	365,000	15,000,000	408,000	45,000,000	278,000
	46	197	69,000,000	425,000	83,000,000	370,000	105,000,000	284,000
	59A	202	89,000,000	497,000	120,000,000	381,000	145,000,000	287,000
	59B	60	89,000,000	497,000	120,000,000	381,000	145,000,000	287,000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잔금	우리은행	1005-603-888365	(주)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

※ 무통장입금시 동, 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 101-1301홍길동)

3 신청자격, 접수처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모집분야	선발인원 (계약호실)	신청자격 및 접수처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 공급	청년 170세대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5.06.25.(수)]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연령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일 것(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①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라 한다)의 120% 이하일 것 ②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접수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청약홈" 검색)	• 청년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 1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2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퍼센트 이하 - 3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의 청약신청이 미달될 때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 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특별공급세대수의 300%이내의 범위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 특별공급(청년) 소득 기준 선정

(단위 : 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이하	3,598,164	5,477,003	7,626,973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110% 이하	3,957,980	6,024,703	8,389,670	9,435,897	9,934,153	10,706,395	11,478,636	12,250,878
120% 이하	4,317,797	6,572,404	9,152,368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월평균 소득(702,038원)×(N-8)}
- ※ 1인당 월평균 소득은 100% 기준, N은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백만)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 대상 급여액(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선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모집 분야	선발인원 (계약호실)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 공급	680세대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5.06.25.(수)]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2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이 주택은 세대원 12인에 한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하며 부적격처리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 계약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거주지역 등에 관계 없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5.06.25.(수)]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미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청약홈" 검색)	•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 선정 및 통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주택별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별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당사 홈페이지(http://www.pjkhapt.com)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일반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예비당첨자 미계약 주택)이 최초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또는 입주자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 방법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구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 방법
특별공급 (청년)	10만원	• 주택청약 청약요약(15개)에 일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10만원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청약 서비스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은 일반적인 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청약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일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청약금을 예치(결제)하여 청약합니다.
일반공급 전 주택형		• 주택청약 청약요약 :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신한,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씨티,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무주택 판정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4항)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자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로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사택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7. 무허가건물 [중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축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9.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4 공급일정

구분	특별/일반공급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6.30.(월) 09:00~17:30	2025.07.03(목) 16:00	2025.07.05.(토)~07.13.(일) 10:00~17:00	2025.07.14.(월)~07.17(목) 10:00~17:00
방법	인터넷 청약접수	개별초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이용시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청약홈" 검색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파주금촌 금호어울림 홍보관	파주금촌 금호어울림 홍보관

※ 상기 신청마감 17시 30분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17시 30분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일반/특별공급)	○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본인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서류 계약 시 대체)
	○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본인	• 주택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	4.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	5.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여권 정보 증명서)
	○	6. 주민등록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7.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9.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세)	배우자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10. 추가 개별통지 서류	본인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특별공급 유형	청년	○ 1. 건강보험자격결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 2.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주택홍보관 비치
		○ 3.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 "상세"로 발급
		○ 4.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
		○ 5.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직계존속	•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 6. 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 소득 관련 가구원수에 임신한 태아를 포함한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각서 : 주택홍보관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청약자 기준
	○	2. 위임장	-	• 주택홍보관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5.06.25.(수)]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용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청년) 소득인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인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①,② 해당직장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일반과제자 / 간이과제자 / 면세사업자	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사업자등록증	①,② 세무서
자영업자	소득사업자	①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①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관리공단/세무서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전년도 재무제표, ③ 재직증명서 ④ 사업자등록증명 ④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①~③ 해당직장 ④ 세무서 ⑤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기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주택홍보관 비치) ① 사실증명원(소득세 신고사실 없음 확인)	① 접수장소 ② 세무서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원, VAT 포함)
건축감리	(주)나우씨엠건축사사무소	2,230,282,720
소방/통신감리	(주)케이제이종합엔지니어링	1,358,600,000
전기감리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861,300,000

- 사업주제 및 시공회사

사업주제	시공회사	자산
------	------	----